
입 법 정 보

2016-17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	5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5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	6
5.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6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6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7
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7
9.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8
10.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	10
11.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
12.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
1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12
14.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3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3
16.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5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15
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16
1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8
2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8
2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9
2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0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1
2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21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22
2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24
27.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4
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4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5
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5
3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6
3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6
3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8
34.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9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9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30
3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31
38.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3
39.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4
4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35
4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5
42.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36
43.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기획재정부)	37
44.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8
45.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9
46.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0
47.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0
48.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1
49.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42
50.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3
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43

52.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44
53.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5
5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45
55.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6
5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6
5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7
5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7
59.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7
6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48
6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48
6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49
63.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0
64.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0
6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51
6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51
6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52
6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54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8. 1.
- 마감일자 : 2016. 9. 12.

○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중복 지급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8. 1.
- 마감일자 : 2016. 9. 12.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브롬산염의 적용대상에 수돗물을 포함하여 수돗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8. 1.
- 마감일자 : 2016. 9. 12.

○ 수산생물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정검역물(이식용, 식용 수산생물 등)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중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수산생물과 양식(축양)하지 않은 수산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함. 이에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중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수산생물과 양식(축양)하지 않은 수산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그리고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국제 표준이 되는 OIE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폐업신고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는 것임

○ 가. 지정검역물의 범위 변경(안 제15조제3호)

나. 지정검역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예외규정 삭제(안 제27조제1항, 안 제28조제1항, 안 제31조제1호)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중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수산생물과 양식(축양)하지 않은 수산생물의 경우에도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다. 폐업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시군구 제출 가능 규정 신설(안 제37조의 13 제2항, 제3항)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6. 8. 1. • 마감일자 : 2016. 9. 12.

○ 품질분야 중복인증 유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의 완화를 위해 품질 불량률에 따른 중소기업청의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 가. 품질인증 제도의 폐지(현행 제17조의 2 삭제)

5.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8. 1. • 마감일자 : 2016. 9. 12.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관련성 논란 방지를 위하여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 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범위의 축소(안 제12조제2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8. 2. • 마감일자 : 2016. 9. 12.

○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 예방·대비 등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업무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실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방재관리대책 보존 업무내용을 명확히하려는 것임

- 가. 사전재해영향성 관리제도 강화(안 제1조의2, 제1조의3)
- 나. 자연재해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5조, 제19조)
- 다. 방재관리대책 보존 업무내용의 명확화(안 제10조의2)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8. 2.
- 마감일자 : 2016. 9. 12.

-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 예방·대비 등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연재해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2조, 제4조 등)
- 나. 검토협의된 사전재해영향성 유효기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신설)
-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의 보궐위원 임기, 제척 및 면직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 라.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 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긴급변경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 바.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 사. 지역자율방재단 필요한 경비 지원범위 명확화(안 제65조)

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8. 2.
- 마감일자 : 2016. 8. 12.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본격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198호, 2016. 5. 29. 공포, 2016. 8.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 시행령 제명 등에서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안 제명 및 제1조·제2조 등).
 - (1) 법률에서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제명, 대회 명칭, 조직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 나.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8. 4. ● 마감일자 : 2016. 9. 19.
- 가축질병 발생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이행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가축전염병의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등 필요한 국경검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을 보완코자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역학조사 시 구체적인 금지행위 규정(안 제13조)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원활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해 거

짓진술 등 역학조사와 관련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의무대상 확대 등(안 제16조)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 파악 및 역학관련 농장 등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가축 및 ‘가축의 알’에 대해서도 이동기록을 작성·보존토록 법적 근거조항 마련

* 작성·보존대상 확대 : (현행) 가축, 식용란 → 가축, 가축의 알

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기관 확대 등(안 제29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기관을 확대(시·도, 시·군·구 → 농식품부, 검역본부, 시·도, 시·군·구)하고, 위촉대상 범위를 농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안 제32조)

수출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입금지지역 해제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법률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

국제기준 및 수출국 제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위험분석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항 마련

마. 수입금지 물건의 제3국 반출 허용(안 제33조)

수입금지된 물건을 처리하는 경우, 수출국으로의 반송 외에 제3국으로의 반출도 허용

바. 탁송품의 검역(안 제39조)

해외직구 등 최근의 소비 형태 변화를 감안하여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물도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사. 검역시행장의 업무 정지(안 제42조)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시, 그 사유에 따라 지정취소 이외에 일정기간 업무 정지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함

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소독·살처분 등 방역조치에 대한 지시 권한부여(안 제52조 및 제53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이행지시 권한을 부여

자. 가축 등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 작성·보존 업무의 위탁(안 제55조) 가축, 식용란 및 종란의 이동기록 작성·보존 관련 정보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

10.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8. 4.
- 마감일자 : 2016. 8. 29.

○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층·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 부여 등의 확대를 위해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 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유자·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등이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안 제8조의4제3항 신설).

1) 시장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등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면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시행하고 있음.

2) 우편·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상세주소 부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등이 기초조사 후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각종 개발사업자의 원인자부담 도로명안내시설 설치규정 명확화 (안 제10조제1항)

1)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2) 일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물만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설치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교체와 철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11.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8. 4.

• 마감일자 : 2016. 9. 13.

○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며,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륜·경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0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륜용 자전거 등록규정 정비(안 제9조제2항제1호)

「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자를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 및 부품 제조업체”에서 “자전거 및 부품 제조업체”로 완화하고자 함

나. 입장료 징수규정 기준 정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1명당 1일”을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별로 입장하는 1명당 1일”으로, “경주장”을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으로 하여 입장료 징수 규정상 입장장소의 범위를 구체화 또는 명확히 하고자 함

다. 특별승식의 종류 및 승자결정 방법 신설(안 제15조의2)

법 개정예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승자결정 방법 중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의 승자결정 방법은 법 제11조에 직접 규정하고, 승자투표 방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자투표 방법 중 법에서 위임된 특별승식의 종류 및 그 종류별 승자결정 방법을 삼복승식, 쌍복승식, 삼쌍승식으로 신설하고자 함

라. 공익사업 지원대상 조문 정비(안 제18조의2제1항)

영 제22조제1항제2호 공익사업적립금 관련 조문의 변경에 따른 하위조문(공익사업 지원대상) 정비하고자 함.

마. 과태료 징수절차 조문 정비(안 제20조)

법 제35조 개정예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12.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8. 4.

• 마감일자 : 2016. 9. 13.

-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륜·경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14200 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구매권 관련 규정 정비(제13조, 제23조)
 - 승자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는 표인 구매권의 발매 근거를 법률(법 제 2조 및 제9조의2)에 명시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나. 경주 승자투표방법 관련 규정 정비(제18조)
 - 경륜·경정 경주 승자투표 방법을 법률(법 제11조)에 명시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명칭변경(제21조, 제28조의 2) 및 사용범위의 구체화(제21조)
 - 법 제17조의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 “사업준비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준비금의 도입취지(법 제17조, 관람·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맞게 대통령령에서 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 라.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비율의 조정(제22조)
 - 1) 공익사업적립금 재정 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통합하여 배분하고자 함
 - 2) 다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 배분비율 중 100분의 2는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공익사업 지원 대상(부령 제18조의2)에 사용하도록 함

1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8. 4.

• 마감일자 : 2016. 8. 24.

- 목제품 이용실태조사시 유통업자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에 사업자의 의견청취 포함하는 한편
인증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편의제고하며 산림탄소상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함

- 가. 목제품 이용실태조사 자료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부담을 완화 (안 제13조)
- 나.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절차에서 현장조사 실시와 사업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업무 합리성 제고 (안 제20조)
- 다. 산림탄소상쇄 검증 전문인력의 교육 등을 신설하여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전문인력을 양성 (안 제23조)
- 라.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도모 (안제32조)

1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8. 4. • 마감일자 : 2016. 9. 13.
- 세월호 침몰사건, 메르스 사태 등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가족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위기가족에 대하여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가족돌봄, 가족 구성원의 심리·정서지원,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과도한 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기간 명시 및 중복지원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234,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범위를 정하고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위기가족긴급지원 제도를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8. 4. • 마감일자 : 2016. 8. 24.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89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처리결과 통보기간 완화(안 제12조의2, 단서 신설)

민간이 제안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현행은 지자체장이 수용여부 통보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의 설치 가능하여 공원조성계획에 상당 규모의 투자사업이 포함되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제안인 경우에는 180일로 완화함.

나.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30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지자체 부담으로 매입계획 수립 포함)하고 필요한 공원시설을 설치(지자체 부담으로 설치계획 수립 포함)한 경우, 국가도시공원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례로 관리하는 경우 등을 지정요건으로 함.

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목적·필요성·지정요건,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지원 범위 및 지정 규모를 확정 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함.

라.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국비지원(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되는 경우 국가적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과 관련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

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6.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8. 4. • 마감일자 : 2016. 9. 13.
- 최근 저비용 항공사의 잇따른 안전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운수권 배분을 위한 항공사 평가 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여 항공사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우리 항공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요인인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항공사의 인천공항 환승수송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가. 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정비(안 별표)
 - 1) 운수권의 배분을 위한 항공사의 평가항목중 안전성 항목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를 확대하며, 정성평가에 안전성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성 비중을 확대
 - 2) 인천공항 환승객 유치 기여도에 따른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인천공항 출도착 노선에 대하여 적용
 - 3) 온실가스 감축 노력 평가 기준에 연료 절감 부분을 평가 요소에 반영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8. 5. • 마감일자 : 2016. 9. 19.
-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거래위

원회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하고,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24조의4, 제24조의5)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 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정비(안 제1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함.

- 다.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도입(안 제25조의4)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8. 5. • 마감일자 : 2016. 9. 19.

- 환경기술 개발·지원·보급,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제정(법률 제13534호, 2015.12.1. 공포, 2016.12.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목적 및 정관에 기재할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법 제5조에 따라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사업 및 수익사업의 종류(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1) 법 제6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함

(2)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시설의 임대,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전시관 관람 등 법에서 정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행 가능한 수익사업의 종류를 명기함

다. 출연금 등의 지급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자금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조건 등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사업 실적 보고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첨부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9조)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마. 시행일에 관한 사항(부칙 안 제1조)

(1)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함

바.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부칙 안 제2조)

(1) 시행령 제정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1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8. 5. • 마감일자 : 2016. 8. 12.
- 한·중 등 자유무역협정 대응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11일에서 2018년 9월 1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1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기간 내 준공시 자동감축)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한시 정원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어업관리단 및 지방해양수산청 정원의 일부에 대해서 2018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종전에 해운정책과장이 분장하던 항만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관련 업무를 항만물류기획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8. 5. • 마감일자 : 2016. 9. 19.
- 낚시터 및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확대, 유해낚시도구 검정기관 지정·운영 등 안전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법률 제14240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에 따라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강화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 통합폐업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강화(안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별지1호서식 및 별지11호서식)
 - 낚시터업 허가·등록 및 낚시어선업 신고시 제출 서류에 낚시전문

교육 이수증 포함

나. 낚시터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예치 규정 폐지(안 제9조 삭제)

- 낚시터 원상회복에 비용의 예치규정이 타 법률에서 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 해소 차원에서 삭제

다.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통합 폐업 신고절차 신설(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허가·등록·신고된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함께 접수처리 하는 절차 마련

-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송부된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도 적절하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근거 마련

라. 낚시어선업 주영업장소 개념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관련 별지11호서식)

- 불명확한 “주영업장소”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내의 항·포구로 명확히 규정

마. 낚시도구 및 미끼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검정방법 등 신설(안제 23조의2부터 제23조의4)

- 검정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검정기관 신고사항 변경, 검정대상별 검정방법, 검정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검정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 마련

2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8. 5. • 마감일자 : 2016. 9. 19.

- 구명조끼 의무화, 출입항 신고절차 개선,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 신설 등 낚시어선의 안전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법률 제14240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하천 호소 등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 신설,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낚시터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예치 규정 폐지(안 제 12조 삭제)
 - 낚시터 원상회복에 비용의 예치규정이 타 법률에서 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 해소 차원에서 삭제
 - 나. 하천·호소 등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 신설(안 제18조의2)
 - 하천·호소 등 「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운항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
 - 다.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기준 등 신설(안 제21조의2)
 - 낚시도구 및 미끼의 유해성 검사를 위한 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 기준 마련
 - 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 개정(안 제23조)
 - 낚시도구 및 미끼의 유해성 검사를 위한 검정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세부업무를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
 - 마.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25조 관련 별표 6)
 - 운항규칙 위반, 출·입항 신고절차 위반, 승선자 명부 미보관 등 강화된 과태료 규정 추가

2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8. 5.
- 마감일자 : 2016. 8. 11.

-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定義) 규정을 상표의 핵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법률 제14033호, 2016. 2. 29. 공포, 2016. 9. 1. 시행)이 전부개정되고,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다자기구팀, 계측분석심사팀 등 12개 팀의 존속기한 도래함에 따라 해당 팀(과) 명칭 등을 정비하며, 서울사무소 관리과장·출원등록과장 보임 근거 및 기록연구관의 복수직급 규정을 수정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하위직을

원상복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8. 5. • 마감일자 : 2016. 8. 16.

- 정부의 세입·세출외로 운용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69호 신설)

또한, 정부의 세입·세출외로 운용되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0호 신설).

-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근거 마련(안 별표2 제69호 신설)

정부의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에 따라 정부 기금으로 운용함.

- 나.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의 근거 마련(안 별표2 제70호 신설)

정부의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제정에 따라 정부 기금으로 운용함.

2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8. 8. • 마감일자 : 2016. 9. 19.

- 현행 시험·검사기관이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한정하여 행정처분하고 있으나, 시험·검사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 및 안전성 향상을 추구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허위성적서 발급 등 시험·검사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지정받은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이 지정취소 되도록 하고자 함.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보증책임자의 업무성격, 관련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품질보증책임자의 자격요건 중 관련 학과 요건을 완화하여 인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5)

1) 시험·검사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검사 기관을 2개 종류 이상 지정받은 자에 대해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

2) 허위성적서 발급 등 시험·검사업무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시험·검사업무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품질보증책임자 요건 완화(안 별표 2)

1) 품질보증책임자의 학력, 경력 요건 중 관련 학과를 완화하여 전공에 관련 없이 품질보증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사전 교육을 이수 하도록 함.

2) 품질보증책임자의 업무성격,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규제가 완화됨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6. 8. 8.
- 마감일자 : 2016. 9. 19.

○ 지난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를 통해 발표된 “중소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 의 후속조치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개인투

자조합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후속조치 사항 :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제 완화, 집합투자기구를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 산출시 1인으로 인정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가격 평가 주체가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국유재산법 시행령)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서비스 업종의 벤처확인 대상 업종 확대가 포함된 바,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가.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제 완화(제3조의9제5항, 제6항)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자회사(특수관계인)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나.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수 산출 방법 명확화 (제3조의6제4항제3호)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에 무관하게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

다. 개인투자조합 보고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제19조제5항)

개인투자조합의 결산서 및 투자실적 등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를 엔젤투자협회에 위탁

라. 개인투자조합 해산사유에 관한 인용조문 수정 (제5조의2)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 해산사유에 관한 법 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개정

마. 국유재산 매각가격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제12조)

국유재산을 벤처집적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매각할 경우 필요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서 임대업 제외 (별표 1)

임대업 3개 업종(주거용 건물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기타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서 제외하고, 업종분류 명칭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

2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8. 8. • 마감일자 : 2016. 9. 19.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 에 대한 제재시효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금융회사 임직원 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35조의2)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 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27.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8. 8. • 마감일자 : 2016. 9. 19.
- ’ 09년도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배제된 규정을 신설하고, 대안학교 설립 인가 구비서류를 정비하여 불필요 규제를 완화하고 유사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체육장 면적 완화 및 미설치 허용 규정 신설 (제3조 제3항 신설)
나.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위한 필수 구비서류에 학교헌장 제외 (제4조 제1항 5호 삭제)

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8. 8. • 마감일자 : 2016. 9. 19.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법률 제14237호, 2016.5.29. 공포)으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제18조, 별표1, 별표2)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8. 8. • 마감일자 : 2016. 9. 19.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법률 제14237호, 2016.5.29. 공포)으로,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신설(제17조, 별표3)

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8. 8. • 마감일자 : 2016. 8. 18.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마련(2016년 7월 28일 시행)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 납부(안 제9조의2조)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또는 조달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로 함

3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8. 9

• 마감일자 : 2016. 10. 11

- 일몰 규제 재검토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를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등록 시 조직 및 직무분장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에 관한 문구와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사항을 각각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변경등록 개선(안 제5조, 안 제13조)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 나.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등록 개선(안 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시 조직과 직무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함
- 다.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서 서식,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신청서 서식 개선
제3조 관련 [별표1]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에 관한 문구와 별지 제1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각각 삭제함

3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8. 9.

• 마감일자 : 2016. 9. 19.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266호, ' 16. 5. 29 공포, '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집산도로 등의 횡단보도 간 이격거리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른 횡단시설과의 거리를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함(안 제11조제4호).
- 나. 운전면허시험용 사진을 여권용 사진과 동일하게 규격을 3.5cm × 4.5cm로 단일화함(안 제57조제1항제1호, 제105조제1항제2호,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2호의2 서식, 별지 제54호 서식, 별지 제55호 서식, 별지 제56호 서식, 별지 제59호 서식, 별지 제64호 서식, 별지 제65호 서식, 별지 제74호 서식, 별지 제105호 서식, 별지 제107호 서식, 별지 제144호의3 서식, 별지 제144호의4 서식).
- 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보통면허를 응시하려는 경우 운전면허응시서류 상 적성에 관한 서류를 안과 의사의 진단서에 한함(안 제57조제1항제4호, 제82조제1항제5호, 제84조제3항제3호, 별표 28, 별지 제42호의2 서식, 별지 제65호 서식).
- 라. 군 운전경력 확인서의 발급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통일함(안 제75조제2항, 별지 제54호 서식).
- 마. 과태료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과 관련된 서식을 신설함(안 제147조의2, 제147조의3, 제147조의4, 제147조의5, 제147조의6, 제147조의7, 별표 40, 별지 제159호의3 서식, 별지 제159호의4 서식, 별지 제159호의5 서식, 별지 제159호의6 서식, 별지 제159호의7 서식 신설).
- 바. 외래어표기법에 맞도록 “알콜”을 “알코올”로 용어를 정비함(별표 28).
- 사. 자동차에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함(별표 39).

3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8. 9.
- 마감일자 : 2016. 9. 19.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266호, ' 16. 5. 29 공포, '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필요한 적성 검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법률 제13829호, ' 16. 1. 27 공포, ' 17. 1. 1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위탁 범위·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자동차에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6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기준을 정함(안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신설).
- 나.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 응시서류 중 적성에 관한 서류와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의 적성에 관한 서류를 안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한함(안 제45조제2항제1호, 제54조제1항제4호).
- 다. 수시 적성검사의 개인정보 통보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을 추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치매질환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10호 신설, 별표 4).
- 라. 체납 과태료 징수 업무의 위탁업무, 위탁절차, 위탁 대상 체납과태료의 범위, 위탁 수수료 등을 정함(안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8조의6, 제88조의7 신설).
- 마. 자동차에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6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 6).

34.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8. 9. • 마감일자 : 2016. 8. 23.
- 현행 군인 징계령의 규정 일부를 상위법인 「군인사법」(법률 제 14180호, 2016. 5. 29. 공포, 8. 30. 시행, 이하 ‘개정 군인사법’이라 함)에 반영하여 개정함에 따라 현행 군인 징계령의 규정 중 개정 군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정비
- 현행 군인 징계령 규정 중 개정 군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제13조(징계등의 양정)삭제], 삭제되는 군인 징계령 제13조가 본문에 포함된 규정 정비[제20조(징계감경) 및 35조(준용)수정]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8. 10. • 마감일자 : 2016. 9. 19.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기준과 법정 관리 대상 야생동물 질병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수입 야생생물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6조제2항과 중복되는 조항(제5조제3항) 삭제
 - 나. 국외에서는 보호 대상이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국외에서 들여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수입·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반출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신설(안 제13조 제1항제7호, 안 제16조제2호)
 - 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시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일부 변경(안 제44조의4제1호)
 - 1) 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관리·사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생동물의 ‘관리자’, ‘사육장소’를 야생동물의 ‘발견자’, ‘보호장소’로 변경
 - 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중 전세계적 종식 질병인 우역은 제외하고, 국내 야생동물에서 발생 위험도가 높고 인체 고위

협질병인 웨스트나일열을 추가(안 제44조의8제1항제1호)

- 마. 멸종위기 야생생물 학명 변경 등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1)
- 바. 법정 관리 대상인 야생동물 질병을 국내외 발생여부와 가축·사람에 대한 영향, 야생동물 보전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 법정관리가 필요한 38종으로 재조정하고 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I 급, II 급으로 등급화(안 별표 3의2)
- 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중 조류, 파충류의 사육면적 구체화, 실외활동을 하는 생물종 구체화, 동물의 용도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적용 예외조항 신설(안 별표 5의2)
- 아.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학명 오류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8)
- 자.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중 “존속기간”란 삭제(안 별지 제 39호서식)
 - 1)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존속기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8. 10. • 마감일자 : 2016. 9. 19.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보관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근거를 확충하는 한편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외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법정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 대상, 신고 시기 및 사유 조정(안 제16조제6항)
 -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은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양수 신고 시기는 ‘양도·양수 전까지’로 변경하며, 사육·재배 장소의 일시적 이동은 양도·양수 신고가 필요한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과도한 규제 정비
-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자의 결격사유(안 제16조의3) 및

등록 취소사유 조정(안 제16조의8)

1) 범죄경력이 아닌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과 관련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여 결격사유 이중규제 해소

2) 일부 사육시설이 등록취소된 경우 자동으로 등록취소 사유(사육시설등록자 결격)가 재발생하여 운영 중인 모든 사육시설이 등록취소되는 문제 해소

다.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실적이 없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취소사유 추가(안 제7조의2)

3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8. 10. • 마감일자 : 2016. 9. 19.

○ 현행 「어선법」 관련 필요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어선법」 상 명확한 법령 근거가 없어 법 해석, 검사집행, 행정처분 등 해석 논란 및 적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어선의 복원성 유지, 만재흡수선의 표시등,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하역설비의 확인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어선법」에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거나 미흡한 규정인 ①어선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그 해당 검사원의 처벌, ②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③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④어선 위치발신장치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등의 안전의무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어선의 복원성 유지(안 제3조의2 신설)

「어선복원성 및 만재흡수선 기준」의 어선의 복원성 유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당 어선의 복원성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며 복원성과 관련된 승

인의 기준·절차, 복원성자료의 작성 요령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만재흡수선 초과 항행금지(안 제4조제2항 신설)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만재흡수선 표시의무화에 따라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흡수선을 초과하여 사람과 어획물 등을 싣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함.

다. 무선설비 상시 작동 의무화(안 제5조제2항 신설)

안전운항과 해상사고 발생시 긴급통신 및 조난신호 요청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 의무화 하도록 함.

라.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안 제19조제2항제4호 신설)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에서 직권말소 하도록 함.

마.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안 제22조의2 신설)

어선검사를 받은 이후 해당 어선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이나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바. 검사업무 등의 대행(안 제4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공단 및 선급법인이 이 법에 규정한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사. 제재조항 신설(안 제43조, 제53조)

어선 검사업무에 있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등 업무를 한 대행기관 검사원 처벌과 어선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정상 조치를 아니한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안전의무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함

38.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8. 10.
- 마감일자 : 2016. 9. 22.

○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이 가능한 사유에 외국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을 수리·검사하기 위해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 및 사업장 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하고, 예부선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정기적 방문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압항 예부선도 다른 예부선과 같이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운용토록 하는 한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증심사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에 관한 민원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민원 신청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안 제17조 및 제18조)

안전진단대행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등에 대하여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나. 인증심사 신청 첨부서류 보완(안 제34조, 별지 제13호·제14호 서식)

법정 인증심사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그간 행정규칙으로만 요구되어 민원 혼선을 초래한 해상운송사업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포함함.

다. 인증심사 유예사유 정비(안 제37조)

인증심사 유예사유에 외국으로부터 구입된 선박이 수리·검사를 위해 3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사업장이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 처분을 받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단기일 내에 재 인증심사 등 시정조치가 불가하므로 소속 내항선에 대해 3개월간 운항정지를 유예하는 규정 마련.

라.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절차 개선(안 제47조, 별제 제23호 서식)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해상운송사업등록증을 추가하고, 변경등록은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며, 민원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등록의 경우 14일, 변경등록의 경우 5일로 단축함.

마.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절차 개선(별표 10)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유·도선 등 개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선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항통제의 시행장소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증심사 합격선박에 대한 특례를 폐지함.

바. 예부선 관련 안전관리체제 강화(별표 11)

예부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정기적 선박 방문·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예부선과 같이 압항예부선에 대해서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도록 함

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보완(별표 13의2)

여객선사 등 사업자 수가 100개 미만인 업종은 상위 1개사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해 사업자의 운영선박 승무원원 및 척수를 세분화한 평가 적용범주를 반영함

39.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8. 10.
- 마감일자 : 2016. 9. 22.

○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고는 국제항해가 곤란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포함하고, 비여객선에 대한 출항통제의 권한을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위임하는 한편, 내항선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해사안전감독관 및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포함함.

나. 비여객선 출항통제권한 위임사항 정비(안 제21조)

비여객선에 대한 출항통제의 권한을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함.

다.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별표3)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면허기준을 관리대상 선박에서의 근무경력이 필요한 4급 해기사 이상으로 보완함.

라.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적용례 규정(안 별표4)

정부대행기관이 신규 지정될 경우 인증심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정 당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

마.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4의2)

선박검사 분야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등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시 응시를 제고를 위하여 현행 자격기준의 일부를 보완함.

4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8. 30.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고(변경신고서)’ 및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폐업신고서’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으로 각각 규정(안 제2조)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집합교육 등 교육방법, 교육비 징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전교육’ 관련 교과세부내용,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다.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 이수시간, 안전교육 연기에 관한 사항, 세부교과별 시간 및 교육개설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4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8. 10. • 마감일자 : 2016. 9. 19.

○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여 수행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설립·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262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와 주관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정함(안 제50조의3 신설)

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안 제50조의4 제1항 신설).

다.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와 정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등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50조의4 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42.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8. 10. ● 마감일자 : 2016. 9. 20.

○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지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각각 축소 조정하고, 실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로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 하는 내용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250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시 민간위원 임기를 제외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 삭제(안 제3조 개정)

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내 행위제한 대상에서 삭제하여 규제 완화(안 제8조 개정)

43. 재정건전회법 제정(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8. 10. • 마감일자 : 2016. 8. 30.

○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재정환경의 변화 추세, 장기재정전망결과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 재정여력의 확보가 긴요한 상황임. 한편,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사회보장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정운용주체별로 분산된 재정운용관련 법령체계 하에서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재정건전화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수립 등 재정건전화 규율을 신설하는 한편, 범정부차원의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재정운용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재정건전화 책무(안 제4조)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강구·추진해야 함

나. 재정전략위원회(안 제5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전략 위원회를 설치함.

다. 채무·수지준칙 법제화(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3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라. 재정부담 수반법률안의 재원조달(안 제9조)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

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여야 함.

마.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평가(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재
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바.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안 제14조 및 제15조)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며, 사회보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사회보험분야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사. 국민참여 및 재정교육(안 제16조 및 제17조)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정보와 통계운용의 투명
성 제고 및 국민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은 재정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44.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8. 10. • 마감일자 : 2016. 8. 17.

○ 병역면탈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사관할을 광역화 하고, 이를 위해 서울지방병무청과 대
구·경북지방병무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병역조사팀을 설치하
고, 서울지방병무청 행정주사 1명을 행정사무관 1명으로 총액인건비
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는 한편, 중앙신체검사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관 정원 1명을 강원지방병무청 서기관 또
는 행정사무관 정원 1명과 상호이체하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정원표에 구분하여 표기하고, 육아
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별
도 정원표를 삭제하며, 일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
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임

○ 가.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광역화를 위한 병역조사팀 설치 : 2팀

병역면탈 수사는 2개 거점 지방청에서 수행, 징병검사 현장범죄 단속
은 지방청별로 수행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복수직 서기관(4.5급) 정원 조정. 중앙신체검사소 5급 1명 ↔ 강원

지방병무청 4.5급 1명

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사항 반영

육아휴직 별도정원 관련 조문 및 별도 정원표 삭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표 신설

- 공무원 정원표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표를 분리 작성

- (정원) 소속기관 행정9급 10명

라. 기타 사무분장 조정 등

강원영동병무지청 관할 자원에 대한 징병검사 직접 수행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 실태조사 업무 신설

‘징병검사전문의사’ 근무관리 업무 삭제(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용어 변경 : 일자리시스템 → 산업지원병역일터

45.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8. 11. • 마감일자 : 2016. 9. 21.

○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의약품정보를 정하고,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미리 확인해야 할 의약품정보를 정함(안 제15조의2)

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지정함(안 제15조의3)

다. 약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줄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18조의2)

라. 다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도매상이 두어야 하는 업무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2조제4항)

46.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8. 11. • 마감일자 : 2016. 9. 21.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등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 확인하는 절차·방법, 예외사유를 정하고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약품 정보의 확인 (안 제12조의2)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직접 조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 등의 문제로 허가 취소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방법, 예외사유를 규정함
- 나. 한의사 국가시험과목 변경(안 별표1의2)
현행 한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본초학, 한방생리학을 제외하고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큰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함

47.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8. 11. • 마감일자 : 2016. 9. 21.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업무의 위탁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위임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위하여 위탁 절차·방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업무 위탁 및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사유(안 제42조의3·제42조의4)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평가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및 간호인력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에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단체중에 위탁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2)
한림원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

48.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8. 11.
- 마감일자 : 2016. 9. 21.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기술자 퇴사시 등록기준 미달의 유예(50일)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및 처분권자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규제개선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전기지식과 시공경험을 가진 전기관련 학과 졸업자가 일정기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행정처분 유예 확대(안 제14조의2)
 - 기술자 퇴사로 인한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시 행정처분 유예 신설(50일)
-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확대(안 제17조의2)
 - 1)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
 - 2) 고유식별정보 처리 운영상 미비점 개선
- 다.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3)
 - 1) 기술능력 :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 중급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 2) 자본금 : 2억 → 1.5억
 - 3) 사무실 : 면적기준 삭제
- 라.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신설(안 별표3의2)
- 마. 전기공사기술자 진입기준 완화 및 인정기준 명확화(안 별표4의2)
 - 1) 전기관련학과를 졸업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중급 기술자 진입규제 완화
 - 2) 고등학교 이하 순수경력자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간 단축 등

49.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8. 11.
- 마감일자 : 2016. 9. 20.

○ 원자력발전 후에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013년 11월부터 약 20개월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6년 7월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동 계획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절차와 이를 투명하게 추진할 실행기구 등 법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실행기구 설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제정안을 마련함

○ 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제2장)

관리위원회의 설치(제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제6조), 사무기구의 설치(제9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제10조)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부지적합성 조사 절차(제3장)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제12조),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제13조 및 제14조), 예정부지확정(제15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지역지원방안(제16조 및 제17조) 등의 사항을 규정함.

다. 관리시설 건설·운영(제4장)

관리시설의 건설(제18조), 관리시설의 운영 등(제19조)의 사항을 규정함.

라. 보칙(제5장) 및 벌칙(제6장)

보고와 검사(제20조), 조치명령(제21조), 대집행(제22조), 처벌(제24조 내지 제27조), 과태료(제28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50.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8. 11. • 마감일자 : 2016. 9. 21.
-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4264호, 2016. 5. 29. 공포, 2016. 5. 29. 시행)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표시·광고 준수사항 중 중복 규제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안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과거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관련 품목만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유형을 염모제(탈색·탈염제 포함) 등 11종으로 확대
- 나. 할랄 화장품 등 인증 표시·광고의 명시적 허용(안 별표 5)
할랄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
- 다. 표시·광고 준수사항 중 중복 규제 삭제(안 별표 5)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이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불법적인 외국 상표·상호의 광고 금지 관련 규정을 삭제
- 라. 행정처분 기준의 개정(안 별표 7)
화장품 법령 상 행정처분 기준을 다른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품 간 형평성을 제고

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8. 11. • 마감일자 : 2016. 9. 20.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이외에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6호, 2016. 5. 29.공포, 11.

30.시행)되고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동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성범죄자의 허위신고 등으로 고지정보서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에 따른 정정사유와 정정사실 등을 재고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성범죄자의 허위신고 등으로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로 공개·고지된 주소가 사실과 달라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에 따른 정정사유와 정정사실 등을 재고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7조제2항)
- 나.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는 서식과 회신 서식을 신설(안 제8조제4항)

5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8. 11. • 마감일자 : 2016. 9. 20.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이외에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과 위탁교육기관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6호, 2016. 5. 29.공포, 11. 30.시행)됨에 따라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면 회신하도록 하고,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과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 하면 회신하여야 함(안 제25조제1항, 제3항)
- 나.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및 초·중등교육법상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안 제 33조제4항제5호, 제6항제6호)

53.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8. 12. • 마감일자 : 2016. 9. 21.

- 동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회유하는 극동산 뱀장어(*Anguilla japonica*)의 자원이 각종 개발에 따른 서식처 파괴와 과도한 어획 등으로 감소하고, 국제적으로도 극동산 뱀장어의 자원보호 움직임(CITES 부속서 등재에 따른 국제간 거래 제한)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자원보호조치.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5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인)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8. 12. • 마감일자 : 2016. 9. 21.

- 2015년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재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39조의2)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55.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8. 12.
- 마감일자 : 2016. 9. 21.

-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 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안 제2조제2항제13호 신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환수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므로 이중 부과 방지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나. 개발부담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시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생략 (안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징수권 및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 완성을 사유로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이므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5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8. 12.
- 마감일자 : 2016. 9. 21.

- 소규모 종교집회장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 가 . 소규모 종교집회장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안 별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고,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두 시설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종교집회장”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5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8. 12. • 마감일자 : 2016. 9. 21.

-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부동산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5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8. 16. • 마감일자 : 2016. 9. 26.

-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 근거 마련(교원능력개발평가)을 위해 평가의 방법과 원칙, 평가결과의 통보 및 결과활용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 교원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안 제 18조제1항)
 - 나.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교원에 유치원 관리자 포함(안 제20조제1호)
 - 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유치원 추가(안 제 22조제1항)

59.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8. 16. • 마감일자 : 2016. 9. 26.

- 주택 정책수립 및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하여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 시 주택 복리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설치대수 등 아파트 주거환경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함

-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세부항목 추가(안 별지 제20호서식)

6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8. 17. • 마감일자 : 2016. 9. 26.
- 원자력안전법 개정('15.12.1)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15.12.22)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 실시 결과 및 선량계 분실자 보고 의무화(안 별표 5 제6호라목·마목 신설)
 - 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고, 배출계획서 내용 중 배출총량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로 처리(안 제16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7호 신설) 하며, 기록·비치사항에 배출량 관련 내용 추가 및 운영허가 신청서에 배출계획서 제출 추가(안 별표 7, 별지 제10호 서식)
 - 다. 원자력관계면허시험 및 면허증 신청서식, 면허증 서식 변경(안 제 118조제4항, 안 별지 제100호 서식·제101호서식·제102호서식·제 103호서식·제104호서식, 안 제102호의서식·제103호의2서식 신설)
 - 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운영허가 변경 신청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별표 8)

6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8. 17. • 마감일자 : 2016. 9. 6.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16.7.28.)됨에 따라 법률 제22조에서 위임한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방법과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방법,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스티커 등) 및 그 기준 마련(안 제5조)
 - 1) 등록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관간 자전거 등록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일원화된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 체계 마련 (제3항, 별표1·2)
 - 2) 자전거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로서 자전거 등록 스티커 방식 도입 및 등록 스티커의 기준 규정(제4·5항, 별표3)
 - 다만,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장치를 추가하거나 스티커를 대체하여 부착 가능

6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인)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8. 17. • 마감일자 : 2016. 9. 27.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 15.9.2)의 이행을 위해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13조의2)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63.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8. 17. • 마감일자 : 2016. 9. 26.
- 도로법 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지위의 양도,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식에 맞춰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관련 서식에 한문식 용어로 표기되어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별지 제46호 서식 중 “승계인” 를 “승계받는 사람” 으로, “피승계인” 을 “승계하는 사람” 으로 함 (안 별지 제46호 서식)

64.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8. 17. • 마감일자 : 2016. 9. 26.
-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소규모굴착공사 범위를 완화하고, 공익사업 수요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공익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가.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 (안 제56조제1항)
 - 나. 연간 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할 때,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점용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안 제69조제3항)
 - 다. 공익사업의 수요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를 대신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안 제73조제2항)
 - 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점용업무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수집·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규정 (안 제106조 신설)

6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6. 8. 18.
- 마감일자 : 2016. 8. 23.

- 북한인권법 제정 등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하부기구로서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신설하고, 통일부 본부에 북한인권과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신설된 기구 및 기존 부서의 업무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정 북한인권법 기능 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
 - 1) 법 제13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신설하고, 하부기구인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설치(안제7장의3 및 안별표 7의1)
 - 2) 북한인권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북한인권과를 통일부 본부에 신설하고, 남북한 주민의 분단고통 해소와 민족 동질성 회복 등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해 북한인권·인도적 지원·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직위 재배정을 통해 신설(안제8조의2 및 안별표1 및 별표1의2)
- 나.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현 통일정책실의 홍보기능을 대변인실로 이관, 대변인실을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으로 개편(안제2조제2항 및 제3항)

6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8. 18.
- 마감일자 : 2016. 9. 27.

- 회사내 예약승계규정 등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시 회사가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승계절차를 개선하고, 직무발명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기업에게도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며, 직무발명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 및 육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제도의 성립률 제고를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

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안 제2조, 제10조 및 제13조)

현재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어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기 전에 종업원이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사용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시 회사가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승계절차를 개선하고, 직무발명을 위해 장비, 연구비, 급여 등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최소한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며, 발명과 유사한 성질의 다른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 범위를 확대함.

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제41조, 제43조, 제46조의2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며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조정절차를 개선함.

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5)

공공성이 큰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 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및 출원 및 등록비용 줄이기 위한 조치 대상 변경(안 제26조의2 및 제27조제2항)

기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개정함.

6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8. 18.
- 마감일자 : 2016. 9. 27.

○ 기업의 영업비밀을 폭 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의 요건을 완

화하고, 지식재산 침해 단속에 있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의 실효성과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상품 형태모방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영업비밀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기업 등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만 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요건을 완화함.

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7조의3, 안 제20조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업무범위를 확대함.

다. 영업비밀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액 인정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제6항)

영업비밀의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손해 배상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안 제18조)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거나,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받지 않은 상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상품 형태모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6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8. 18.
- 마감일자 : 2016. 9. 27.

○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 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 가. 소액 국유림 대부료등의 일괄 징수제 도입(안 제23조제1항·제7항)

매년 징수하는 국유림의 대부료의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등 기간 중의 대부료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도록 함

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안 제33조)